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本誌는 「判例硏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모아 分析해 보았다. ……<編 輯 者 註>……○

⊙ 第 20 回

〈前號에서 계속〉

同一類似

區分 /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 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8후 12	79. 7. 24 (棄 却)	(第112類) 호 텔 업 印 刷 業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9號 및 第10號 (他人 營業表示와 동일 類似한 營業表示의 使用)
76抗告(절) 90 (74—142)	78. 6. 9 (不成立)		

本願商標 :

(出願 74—142)

引用商標 :

반 도 호 텔

◉ 判決內容

本願營業標와 對比營業標(國際觀光公社가 運營하던 호텔의 營業標내지 그 名稱인 未登錄되었던 반도호텔)가 客觀的, 全體的으로 觀察하여 相互類似하거나 去來上 混同의 우려가 있음은 分明하며 현저하게 需要者간에 周知된 營業標는 비록 未登錄의 것이라도 出處表示, 信用表示등 제반社會的 技能面에서 登錄된 것과 동등한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다름없는 法的保護를 부여하여 그와 類似 또는 混同의 憂慮있는 營業標의 登錄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商標法 第9條 1項 9號 내지 10號의 趣旨에 合致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趣旨의 原審判斷은 正當하다.

區分 /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 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7후 46	79. 10. 10 (棄 却)	(第10類) 유화물, 탄화물 外 수종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 〔他人의 先登錄商標(28087號)와 觀念이 동일함〕
77抗告(절) 408 (75—2532)	77. 9. 30 (不成立)		

本願商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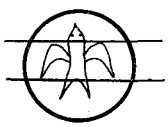

(出願 75—2532)

引用商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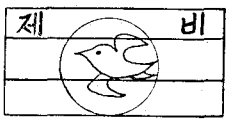

◉ 判決內容

原審決의 설시理由에 의하면, 本願商標는 引用商標(登錄 28087)와 다소의 差異는 있으나 全體的 觀察에 의하여 서로 類似한 것으로 認定되고 그 指定商品도

서로 抵觸된다고 認定한 다음 引用商標權者(임채홍)가 引用商標 登錄後 營業에 使用하는 자도 아니고 使用하고자 하는 자도 아닌 자로서 主體的 要件이 결여되었으니 引用商標는 取消審判을 기다릴 必要없이 登錄當時 이미 消滅된 것이고, 抗告審判 繫留中에 他人에게 移轉登錄하였으니 그 節次도 無效라는 審判請求人의 所論 主張에 대하여 引用商標가 원부상 存續하고 있는 것이어서 商標法에 規定하는 소정절차에 의거 무효 또는 取消되지 않는한 그 權利를 부정할 수 없다고 判斷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營業開始의 準備만을 하고 營業을 開始하지 않은 商標權者가 양수인에게 營業을 開始하려는 趣旨의 合議로서 商標權을 양도하는 것도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위 임채홍이가 所論과 같이 營業을 廢棄했거나, 引用商標가 無效되었음을 記錄上 긍인하게 할 資料가 없는 本件에 있어서는 商標法의 所程節次에 의하여 引用商標가 無效 또는 取消되어야만 權利를 부정할 수 있는지에 關한 法理論을 따지지 않더라도 原審의 結果는 正當하고 原審決에 所論 法理오해·審理未盡·理由不備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區分 /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 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80후 53 79抗告(절) 5 (77—7552)	80. 9. 30 (棄 却) 80. 2. 29 (不成立)	(第26類) 침대, 의자, 걸상, 장의자, 벤취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 〔他人의 商標와 類似(稱號, 觀念)〕

本願商標:

제비표

(出願 77—7552)

引用商標: 商品: 옷장

제비표

(登錄 55601)

◉ 判決內容

原審判決 거시의 證據를 檢討하여 보면 原設의 事實, 認定이 수긍되고 그 事實, 認定 과정에 採證法則 違背의 위법있음을 認定할 수 없으며, 原審의 判斷 또한 正當하고 原審決에 所論과 같은 審理未盡으로 因한 理由不備의 위법이나 判斷遺脫 내지는 法理오해의 위법이 없다.

〈抗告審 要約〉

兩商標는 稱號에 있어서 공히 "제비표"라 號稱되어 稱號가 同一하고 觀念에 있어서도 공히 "제비표"라고 認識될 것이므로 兩商標는 類似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한편 請求人은 兩商標의 指定商品이 같은 家具類에 속한다 할지라도 모양이나 用途等이 상이하여 去來上 오인混同이 없다는 點에 대하여는 商品이 同種이냐 이종이냐의 判斷은 그 指定商品이 去來販賣되는 狀況 및 實情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될 것이므로 兩商標의 指定商品이 같은 家具類에 속하며 그 販賣處 또한 一般 家具類 販賣處에서 去來되므로 兩商品은 異種商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兩商標는 稱號와 觀念이 類似하여 그 指定商品이 類似商品에 속함이 明白하므로 法 9條 1項 7號를 適用한 원 거절사정은 적합하다,

區分 /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 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9후 52 78抗告(절) 195 (76—6325)	79. 11. 27 (棄 却) 79. 4. 30 (不成立)	(第10類) 化學藥品과 醫藥品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 〔他人의 先登錄商標(12471號)와 觀念類似〕

本願商標:

(出願 76-6325)

引用商標:

Three Diamonds

(登錄 12471)

◉ 判決內容

原審決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本原商標의 圖形은 白色의 다이아몬드 圖形 3개가 배열되어 있어 去來社會의 通念上 3개의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게 되어 他人의 登錄된 商標(Three Diamonds)와 대비하여 볼 때 "3개의 다이아몬드"라는 점에서 觀念이 類似하다고 判斷하였다.

記錄에 의하여 本願商標의 圖形을 살펴보니 그 모양이 所論과 같이 특이한 形態로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全體로서 볼 때에는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게 되지 아니하고 벌집모양을 생각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는 바이며, 原審의 위와 같은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經驗則을 위반하였거나 判斷遺脫 내지 審理未盡의 위법이 없다.

〈계 속〉